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0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소희·구자근

박덕흠 • 서미화 • 최수진

김선교 · 주호영 · 김 건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.

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 9조의9제7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

제55조의3제1항제2호 중 "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"를 "제4호까지, 같은 조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7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9(금지행위) 누구든지 65	제39조의9(금지행위)
세 이상의 사람(이하 이 조에	
서 "노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	
된다.	,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
	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
	가하는 행위
제55조의3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	제55조의3(벌칙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	
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39조의9제1호(폭행에 한정	2
한다)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	<u>제4호까지, 같은 조</u>
<u>은 조 제6호</u> 에 해당하는 행위	제6호 또는 같은 조 제7호
를 한 자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